

## < 정 오 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트리플알파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8.10.11
3. 주요 정정사항 :
  - C-P1e 클래스 신설

**[규약]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3조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	클래스 신설	①~② (생략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9. (생략) 10. <신설>	①~② (현행 유지)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9. (현행 유지) 10. Class C-P1e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온라인 (On-line) 가입 전용 수익증권 <신설 2018. 10. 11>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클래스 신설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9. (생략) 10.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9. (현행 유지) 10. Class C-P1e <신설 2018. 10. 11>
제39조(투자신탁보수)	클래스 신설	①~② (생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9. (생략) 10. <신설>	①~② (현행 유지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~9. (현행 유지) 10. Class C-P1e <신설 2018. 10. 11>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6.00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20

			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5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5</p>
제41조(환매수수료)	환매수수료 일괄 적용	<p>① (생략)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<u>Class A1, Class A-e, Class C1, Class C-e, Class C-F, Class C-W, Class S, Class C-G 수익증권</u></p> <p>가. <u>30일 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나. <u>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30%</u></p> <p>2. <u>Class C-P1 수익증권 : 해당사항 없음</u>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① (현행 유지)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&lt;개정 2018. 10. 11&gt;</p> <p>1. <u>30일 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2. <u>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30%</u>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 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 &lt;개정 2018. 10. 11&gt;</p>
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	문구 정정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 또는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11>
부칙(8)	-	-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b>요약정보</b>			
<b>Ⅲ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</b>			
<b>[1] 과세</b>			
-	클래스 신설에 따른 과세 내용 추가	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 가입자에 한함)	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, C-P1e 가입자에 한함)
<b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신설	- <신설>	- C-P1e 클래스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	클래스 신설	- <신설>	- C-P1e 클래스

기구의 명칭			
2.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변경에 따른 연혁 추가	-	2018.10.11 - C-P1e 클래스 신설
6. 집합투자 기구의 구조	클래스 신설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<그림> - <신설>	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<그림> - C-P1e 클래스 추가
		나. 종류형 구조 - <신설>	나. 종류형 구조 - C-P1e 클래스
11. 매입, 환 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	클래스 신설,	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- <신설>	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- C-P1e 클래스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	클래스 신설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- <신설>	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- C-P1e 클래스
	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<신설>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C-P1e 클래스
14. 이익 배 분 및 과세 에 관한 사 항	클래스 신설 에 따른 과 세 내용 추 가	나. 과세 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 가입자에 한함) (생략)	나. 과세 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, C-P1e 가입자에 한함) (현행 유지)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b>요약정보</b>			
<b>Ⅲ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</b>			
<b>[1] 과세</b>			
-	클래스 신설 에 따른 과 세 내용 추 가	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 가입자에 한함)	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, C-P1e 가 입자에 한함)

<끝>.